##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> 심 사 보 고 서

## I．심사경과

가．제출일자 및 제출자 ：2009년 4월 29일
충청북도교육감
나．회 부 일 자：2009년 5월 1일
다．상정 및 의결일자
○ 2009．5． 13 제280회 충청북도의회（임시회）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，질의 • 토론，심사의결（원안가결）

## I．제안설명 요지

（제안설명 ：이장길 기획관리국장）

가．제안이유
○『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』제 32 조，『초•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 31 조 및 제 54 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 게 인성교육과 체험활동에 바탕을 둔 맞춤식 프로그램으로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＂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＂을 설치하 고 그 설치 목적과 분장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한

편, 그 밖에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수정•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

가. 제3장에 "제8절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"을 신설함
○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의 설치 목적을 정함(안 제29조)
○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그 업무를 정함(안 제30조)
○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의 분장 사무를 정함(안 제31조)

나. 기 타
○ 본청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다른 조례의 부서명칭을 변경함. (안 부칙 제2조)

## III. 검토보고 요지

## (교육사회전문위원 윤양한)

## $\square$ 본 일부개정조레안은

$\bigcirc$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자아존중감을 제고시키고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인 "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"을 설치하고자 그 설치목적과 소관업 무 등 기관 설립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과 도 교육청의 조직개편 으로 변경된 타 조례의 부서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략"

V. 토론요지 : "생략"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VII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IX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O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교육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 4 장 제 29 조부터 제 33 조까지를 각각 제 32 조부터 제 36 조로 하고, 제 3 장에 제8절(제29조부터 제31조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 제8절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

제29조(설치) (1) 법 제32조,「초•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31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체험활동에 바탕 을 둔 맞춤식 프로그램으로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명학생교육원(이하 "청명학생교육원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(2) 청명학생교육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산 3 번지에 둔다. 제 30 조(원장) 청명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며,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공무원을 지휘•감독한다. 제31조(업무) 청명학생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대안교육 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
2. 대안교육생 교육과정 편성 - 운영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 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(1)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4 조제2항 중 "기획관리과장"을 "행정예산과장"으로 한다.
(2)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2항제1호 중 "기획관리과장"을 "행정예산과장"으로 한다.

## 신•구조문대비표

| 현 | 낑 | 게 정 안 |
| :---: | :---: | :---: |
| <신 설> |  | 제 3 장 직속기관 <br> 제 8 절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 <br> 제29조(설치) (1) 법 제 3 조, 도 중 등교육법 시행령」제31조 및 쥬4 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생활 부 적응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체험 활동에 바탕을 둔 맞춤식 프로그 램으로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 이 하 "청명학생교육원"이라 한다 를 설치한다. <br> (2) 청명학생교육원은 충청북도 진 처군 문백면 은탄리 산 헌지에 둔다. <br> 제30조(원장) 청명학생교육원에 원장 을 두며,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 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, 소속공무 원을 지회 - 감독한다. <br> 제31조(업무) 청명학생교육원장은 다 음 사항을 관장한다. <br> 1. 대안교육 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<br> 2. 대안교육생 교육과정 편성 -운 영에 관한 사항 <br> 3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 활동 및 연수 에 관한 사항 |


| 제 4 장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| 제 4 장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|
| :--- | :--- |
| 제29조 (생 략) | 제32조 (현행 제29조와 같음) |
| 제30조 (생 략) | 제33조 (현행 제30조와 같음) |
| 제31조 (생 략) | 제34조 (현행 제31조와 같음) |
| 제32조 (생 략) | 제35조 (현행 제32조와 같음) |
| 제33조 (생 략) | 제36조 (현행 제33조와 같음) |

## 관계법렁 발췌

$\square$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(법률 제8852호, 2008.2.29)
제32조 (교육기관의 설치)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 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 할 수 있다.
$\square$ 초•중등교육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1375호, 2009.3.27)
제 31 조 (학생의 징계 등) (1)법 제 18 조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 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 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1. 학교내의 봉사
2. 사회봉사
3. 특별교육이수
4. 퇴학처분
(2)학교의 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,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 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(3)교육감은 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•운영하고, 이에 따른 교 원 및 시설•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54조 (학습부진아 둥에 대한 교육) (1)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 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.
(2)학교의 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 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둥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